

#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

A Study on Types and Commentaries of Sangseo in Korea

김 유 미 (Kim, Yumi)\*\*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尙書類 문헌의 원문 서지학적 비교 |
| 2. 국내 尙書史 개관         | 5. 결론                 |
| 3. 국내 尙書類 문헌의 종류와 형태 | <참고문헌>                |

## < 초 록 >

先史 시대에는 주로 口傳이나 事物로 의사소통과 문화 계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아시아 文字의 창제 기원을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周易』 『繫辭』 등에 河圖洛書·結繩·書契·八卦 등의 上古 문헌의 연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로 부터 文字에 의한 歷史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아시아 儒家 經典인 『十三經』 중 『尙書』는 동아시아 最古이면서 最高의 문헌으로서, 公文書이면서 經學의 요체로서 古代 散文의 시초로 간주된다. 또한 古代의 역사·철학·문학의 원료로서도 평가 받고 있어서, 『尙書』에 대한 연구는 제반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일본에서 문헌학(서지학, 이하 문헌학)적으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尙書』 고유의 문헌 내용·형식(형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尙書』의 원류로부터 『尙書』의 주요 注解書인 『尙書正義』·『書集傳』·『書傳大全』·『尙書注疏』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尙書』 연구의 흐름과 더불어, 經文에 대한 注解의 영향 관계와 간행 형태를 조사·비교하였다.

한국에는 上古시대로부터 이미 『尙書』가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古代시대에는 唐代 『尙書正義』·中世 시대에는 宋代 『書集傳』·近世시대에는 明代 『書傳大全』·清代 『尙書注疏』가 수용되어 간행·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국본으로는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공인된 注解書인 『書傳大全』만이 전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尙書』의 주요 공인된 注解書로는 크게 『尙書正義』·『尙書注疏』계통과 『書集傳』·『書傳大全』계통의 2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간의 원문서지학적 비교를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書集傳』·『書傳大全』계통이 『尙書正義』·『尙書注疏』의 구성체제와 내용체제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要語: 尙書, 書經, 尙書正義, 書集傳, 書傳大全, 尙書注疏

\* 2013년 교육부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으로 전문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尙書正義1』의 해제에서,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김유미는 동아시아의 『尙書』에 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서술한 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의 공인된 『尙書』의 注解書인 『尙書正義』·『書集傳』·『書傳大全』·『尙書注疏』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haehwan@aks.ac.kr)

접수일: 2017년 6월 11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3일

<ABSTRACT>

In the prehistoric times, communication and cultural succession had been carried out mainly through word of mouth and objects before letters were created. Although the origins of the East Asian characters cannot be found exactly, they can be assumed as the original forms of Hadonakseo (河圖洛書), Gyeolseung (結繩), Seogye (書契) and Palgwae (八卦). Since those types of letters were created, history could be recorded in East Asia. *Sangseo* (尚書), which is regarded as the origin of prose having historical text, is the oldest official document and the oldest Confucian classic book in the East Asia.

It has been studied in many countri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Because it is worthy of being the oldest record having the origins of the ancient people and nations of East Asia, the studies of *Sangseo* have been perform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hilosophy, history, linguistics, archeology and bibliography in Korea, China and Japan, etc.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authenticity of the historical statement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of *Sangseo* has been done in China, and the study on the different versions and commentaries of *Sangseo* has been performed in Japan. However, only philosophy, history, and linguistics have been studied in Korea. Due to this,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formation and variation of *Sangseo* has not been considered yet.

In this research paper, the origin and the information of different versions and commentaries of *Sangseo* were studied. In addition, the history of imported and printed books of *Sangseo*, which has authorized collections of commentaries, such as *Sangseojeongui* (尚書正義) of Tang Dynasty, *Seojibjeon* (書集傳) of Song Dynasty, *Seojeondaejeon* (書傳大全) of Ming Dynasty and *Sangseojuso* (尚書注疏) of Qing Dynasty, was been studied for th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Key words: *Sangseo*(尚書), *Seogyeong*(書經), *Sangseojeongui*(尚書正義), *Seojibjeon*(書集傳), *Seojeondaejeon*(書傳大全), *Sangseojuso*(尚書注疏)

## 1. 서론

文字가 창제되기 이전인 先史 시대에는 주로 口傳이나 事物로 의사소통과 문화 계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아시아 文字의 창제 기원을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周易』 『繫辭』 등에는 고대 문헌인 河圖洛書·結繩·書契·八卦 등의 연원이 나타나 있어, 이로 부터 歷史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1)</sup>

『尙書』는 口傳 역사에서 成文 역사로 도달하기까지의 산물로,<sup>2)</sup> 先秦시대에는 ‘書’<sup>3)</sup>로 불리웠다. 그런데 이 ‘書’는 『詩經』 小雅 『出車』에 나오는 “畏此簡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公文書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尙書’의 명칭은 『墨子』에 처음 나타나기는 하나, 清代 王念孫 등은 여기서의 ‘尙書’의 의미는 서명이 아닌 ‘上者(위로는)’라고 보았다. 대신에 漢代 『春秋繁露』·『史記』 등에서 ‘書’와 ‘尙書’<sup>4)</sup>가 명칭되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尙書’의 의미에 대해, 尙書正義 『尙書序』에는 “上古의 書이기 때문에 ‘尙書’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한편 春秋시대에는 이미 經이 書의 일종으로 쓰였으며, 戰國시대에는 經이 書名과 결합되는 것이 보인다. 또한 漢代 『漢書』 등에서 儒家 經典을 열거한 것을 보면, ‘書經’<sup>5)</sup>도 漢代를 전후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 
- 1) 先史 시대에서 歷史 시대로의 전환을, 일반적으로 文字의 출현 시기로 기준을 삼는다. 이 기준으로 보면, 最古의 歷史 시대는 B.C. 3000년경 중동 지역의 수메르 문명(Sumer civilization)이 해당되며, 이 시기에는 楔形文字(cuneiform script)를 새긴 점토판(tablets of clay)이 사용되었다(Frank Hole and Robert F. Heizer. 1969. *An Introduction to Prehistoric Arche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 35-36.). 그리고 동아시아는 B.C. 1750년대인 商代로 여겨지고 있다.
  - 2) 上帝·三皇五帝 등의 說話가 기재되어 있어, 口傳 역사에서 成文 역사로 변모된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上帝의 개념은 시대별로 변화되어, 商代에는 上帝(帝)라는 至上神으로, 周代에는 人格神적인 天으로, 春秋시대에는 儒家·道家·墨家에 따라 상이한 개념(儒家: 天을 道德化, 道家: 天을 부정하여 道로 대치, 墨家: 天을 그대로 계승)으로, 西漢代에는 儒家와 墨家の 天觀을 종합하고 陰陽說을 첨가한 天人相關說로, 東漢代에는 道家의 天觀으로, 魏晉南北朝에는 玄學으로 심화되어 天에서 天理로 변모되어, 唐宋代에 性理學으로 체계화되었다(溝口雄三·丸山松幸·池田知久(編)/김석근·김용천·박규태(譯),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족문화문고, 2003), 27-32.).
  - 3) 書의 기원은 筆書(左傳 『莊公23年』 “君舉必書”)한다는 의미의 動詞에서 文書와 典冊(典·本·書籍·典籍·圖書·文獻 등)을 의미하는 名詞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현존하는 甲骨文에는 書자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聿字가 보이는데, 이 聿字의 형태인 붓을 손으로 잡은 모양을 본떠서 筆의 초기 文字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이 聿字에 聲符가 되는 者字가 더해져서 書字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說文 “書, 箸也. 從聿, 者聲”) (鄭傑文, 傅永軍, 『經學十二講』 (北京: 中華書局, 2007), 89-90.; 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0), 87-89.; 劉起鈺, 『尙書學史』 (北京: 中華書局, 1989), 4-6.; 姜廣輝(主編), 『中國經學思想史 卷1권』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10.; 李民, 王健, “前言,” 『尙書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3-7).
  - 4) 史記 『儒林列傳』 “漢定, 伏生求其書, …, 卽以教于齊魯之間, 學者由是頗能言尙書. 諸山東大師無不涉尙書以教矣.”, 尙書正義 “伏生以其上古之書, 謂之尙書.”라고 되어 있다. 伏勝은 秦代 博士로 漢代 今文尙書를 전한 始祖인 것을 감안하면, 漢代 今文家에 의해서 ‘尙書’가 書名으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馬王堆帛書의 『要』篇에 적혀 있는 孔子의 말에 “尙書多於矣, 周易未失也, 且又古之遺言焉.”라고 되어 있다. 帛書의 필사 시기가 文帝 시기로, 바로 伏勝이 尙書를 교수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要』篇은 이 시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尙書’의 명칭도 伏勝의 때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劉起鈺(1989), 7-9.; 姜廣輝(主編) (2003), 418쪽).
  - 5) 漢書 『律曆志下』 “成湯書經湯誓湯伐夏桀”, “武王書經牧誓武王伐商紂”, 漢書 『楊胡朱梅云傳』 “…, 章治尙書經爲博士.” 이외에도 逸周書 “…, 自隨書經籍志, …, 無以別于逸尙書, ….”

볼 때, ‘書’·‘尙書’·‘書經’의 세 이름이 漢代에 병칭되어 현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위와 같이 『尙書』는 동아시아의 始原을 담고 있기에, 동아시아의 고대 민족과 국가의 유래를 간직한 最古이면서 最高의 散文으로된 문헌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尙書』는 上古 시대에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중국·일본에서는 역사학·철학·문학·언어학·고고학·문헌학 등 제반의 분야에서 『尙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고고학과 문헌학이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현존하는 『尙書』 문헌에 내재된 역사적 사실의 진위여부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문헌학적으로 『尙書』의 판본과 注解에 대한 연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다만 역사학·철학·문학·언어학적으로만 연구가 되고 있어서, 『尙書』의 형성과 변이의 문제를 문헌학적으로까지는 아직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尙書類 문헌이 국내에서 형성된 배경과 형태(형식)적·내용적 추이와 더불어, 이후 동아시아에서 국가적으로 정식 공인된 『尙書』의 注解書로서 唐代 『尙書正義』·宋代 『書集傳』<sup>7)</sup>·明代 『書傳大全』·清代 『尙書注疏』<sup>8)</sup>가 한국에 수용된 이후에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관계와 간행·보급 등의 양상을 문헌학적으로 개괄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의 유학사에서 고대에 수용한 『尙書正義』와 중세에 수용한 『書集傳』을 거쳐, 조선시대에 수용한 『書傳大全』·『尙書注疏』의 형태와 내용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여, 오늘날 동아시아 경학사에서 이들 注解書가 가지는 의의와 가치를 再考해 보도록 하겠다.

## 2. 국내 尙書史 개관

『尙書』는 일찍부터 韓國에서 君主의 修身·治道の 원리와 古代 統治制度의 史料로서 영향을 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孔子의 刪定을 거처며 聖人의 大經으로서, 君主 외의 私人에게도 본받을 만한 常道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尙書』를 학문의 영역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다양한 『尙書』 漢文本과 國譯本이 간행되었다.

한편 삼국시대 이전부터 『尙書』가 이미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며,<sup>9)</sup> 삼국시대·남북국시대에는

6) 姜廣輝(主編)(2003), 417-418.; 김학주, 『새로 옮긴 書經』(서울: 明文堂, 2012), 23-24.; 劉起鈞(1989), 7-9.; 鄭傑文, 傅永軍(2007), 89.

7) 蔡沈의 『書集傳』은 異名이 매우 많다. 蔡沈의 序에 나타난 ‘集傳’과 대다수의 논저 등에서 사용되는 『書集傳』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書集傳』을 기본 명칭으로 삼았다.

8) 『尙書注疏』의 명칭은 이미 宋代 十三經 체제가 완성되면서 출현하였으나, 구성체제와 내용상 唐代 『尙書正義』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清代 阮元의 『尙書注疏』는 前代의 『尙書正義』를 복원하고자 하여 여러 문헌을 참고하며 校勘記까지 포함시켰기에, 오히려 구성체제와 내용상 唐代 『尙書正義』와 크게 차이가 생겨, 본고에서는 편의상 宋代에는 『書集傳』·清代에는 『尙書注疏』라고 지칭하였다.

9) 陳泰夏 등의 일부 학자들은, 商(殷)을 韓國의 先祖인 東夷族이 세운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辛司可, 『韓知名

唐代『五經正義』에 속하는『尙書正義』가 수용되어 국가교육기관에서 공식교재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시대 말기에 들어온『書集傳』이 과거시험교재로『尙書正義』와 통용되다가, 조선시대 초기에 명나라로부터 받은『書傳大全』이 보급되면서『書傳大全』이 주교재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부분적으로『書集傳』·『尙書正義』도 함께 간행·유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에 清代『十三經注疏』<sup>10)</sup>에 속하는『尙書注疏』가 수용되면서, 唐代의『五經正義』에 속하는『尙書正義』·宋代의『十三經注疏』에 속하는『尙書注疏』와 혼재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尙書』 → 『尙書正義』 → 『書集傳』 → 『書傳大全』 → 『尙書注疏』

위와 같이 韓國의 유구한 역사에서『尙書』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고대·중세·근세에 나타난 주요 尙書類 문헌에 대한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正史로서의『三國史記』·『高麗史』·『高麗史節要』·『朝鮮王朝實錄』 등을 살펴본 결과, 고려시대에는『九經』(『尙書正義』)·조선시대에는『五經淺見錄』(『書集傳』)·『四書五經大全』(『書傳大全』)의 간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表 1> 주요 간행 기록

시대	세기	왕대	간행시기	간행지역		서명	현존수량
				지역	간행처		
고려	11세기	文宗	1056 (文宗 10)	중앙	無	九經 (尙書正義로 추정)	無
	12세기	肅宗	1101 (肅宗 6)	중앙	無	九經 (尙書正義로 추정)	無
조선	15세기	太宗	未詳	중앙	無	五經淺見錄 (書集傳을 底本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	無
		世宗	1427 (世宗 9)	중앙	無	四書五經大全 (書傳大全)	無
			1429 (世宗 11)	慶尙道	無	四書五經大全 (書傳大全)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 貴 1232-15】

\* 이외에 조선시대 1478(成宗 9)에『尙書正義』가 간행되었고, 世宗대 이후『書傳大全』이 계속 간행되었다.

學者稱漢字並非中國文字, 韓國人祖先發明漢字, 《環球時報》, 2011년 4월 21일자). 이러한 說이 사실이라면, 箕子 때를 전후로 전해지는『尙書』도 존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史記』「秦始皇本紀」“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州, 僊人居之, 請得齊戒與男女求之, 於是, 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 『太平御覽』「始皇帝」“方士徐福等, 入海求神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秦始皇은 徐福 일행을 파견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되는 傳說에 의하면, 徐福은 최종목적지인 日本을 가기 전에, 韓國의 濟州道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 이때에『尙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10) 宋代『十三經注疏』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2.1 古代시대

韓國은 일찍부터 유가 경전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제도·과거제도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尙書』도 三國 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三國시대·南北國시대에는 『尙書』를 포함한 교육 과정이 이미 국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尙書』가 국가 차원에서 존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小獸林王(재위 371~384)대에 太學(최초의 官學)·扁堂(최초의 私學)<sup>11)</sup>이 설립되었고, 백제에서는 近肖古王(재위 346~375)대에 阿直岐와 王仁 등이 일본에 파견되어 『千字文』과 『論語』를 전해 주었으며, 신라에서는 眞興王(재위 540~576)대에 종래의 여성 중심의 源花가 남성 중심의 花郎徒로 개편되었다. 또한 일본의 기록에 百濟에 五經博士<sup>12)</sup>를 비롯한 歷博士·瓦博士·採博士 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고구려·신라와 더불어 백제에도 유학 교육 기관이 일찍이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고구려·백제·신라에서도 각기 서로 다른 교육체제에서, 유학 경전인 『尙書』를 포함한 동일한 『五經』이 교육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南北國시대에 통일신라에서는 神文王(재위 681~692)대에 최고 교육기관인 國學(최초 文廟가 설치된 官學)<sup>13)</sup>이 정비되어, 景德王(재위 742~765)대에 太學監으로 변경되었다가, 惠恭王(재위 765~780)대에 다시 國學<sup>14)</sup>이라고 지칭되었다. 또한 元聖王(재위 785~798)대에 이르러서는 國學에서 讀書三品科<sup>15)</sup>가 시행되었고, 삼국 통일 이후 入唐 儒學生<sup>16)</sup>이 크게 늘어나서 821년(憲

- 11) 372년(小獸林王 2) 설립된 太學(최초의 官學)은 본래 중앙에 있는 상류층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최고 학부로, 평민 자제나 지방 호족의 미혼 자제들은 입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으로 扁堂(최초의 私學)이 생겨났는데, 정확한 설립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427년(長壽王 15) 평양 천도 이후 전국 각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내용을 비교해 보면, 太學은 五經을 중심으로 三史(『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文選』·『晉春秋』·『玉篇』·『字統』·『字林』 등을 교육하였으며, 扁堂은 이러한 경전 외에도 활쏘기 등의 무예도 가르쳤다.
- 12) 백제에는 博士제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三國史記』에 백제에서 梁나라에 『毛詩』 博士를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五經 중에 『毛詩』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尙書』 博士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三國史記』 百濟本紀 聖王 19년조).
- 13) 신라 眞德女王(재위 647~654)대에 國學에 소속된 大舍의 관직이 설치되었다. 國學 교수에서도 五經(『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을 중시하여, 五經三史와 諸子百家를 통하는 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임용하였다. 이때 『五經正義』가 유입되어, 『尙書正義』가 교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14) 太學에서 왕이 太學 博士들에게 『尙書』를 강의하게 한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국가 차원에서 『尙書』를 중시하고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年 6月조).
- 15) 통일신라시대 讀書三品科에 五經(『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三史·諸子百家에 통달한 자는 등급을 뛰어 넘어 등용하였다. 이때에 唐나라의 영향으로, 『尙書』의 교재로 『尙書正義』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元聖王 4년조).
- 16) 신라에서 唐나라에 유학을 보내었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신라에서 唐의 교육제도를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唐의 明經 시험 과목인 大經(『禮記』·『春秋左氏傳』)·中經(『詩經』·『周禮』·『儀禮』)·小經(『易經』·『尙書』·『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唐代 『五經正義』가 편찬된 것을 고려하면, 신라에서 『尙書正義』가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王 9년 5월조).

德王 13) 金雲卿이 唐의 賓貢科에 최초로 급제한 이후 入唐 儒學生 중에 임용된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君主가 직접 國學(太學)에서 太學博士들에게 『尙書』를 강의하게 하였고, 17) 讀書三品科를 시행하며 特品에 『尙書』를 비롯한 五經을 포함해서 국가 차원에서 『尙書』를 중시하고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해에서도 文王대에 국립대학인 胄子監을 설립하였고, 역시 入唐의 賓貢科에 급제한 渤海人이 많아지면서 登第서열을 두고 신라와 爭長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여, 『五經』에 포함된 『尙書』도 역시 교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에 唐代 『五經正義』가 편찬된 것을 고려하면, 『尙書正義』를 포함하는 『五經正義』가 삼국시대 말기부터 수용되어, 국가 교육기관에서 정식공인교재로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남북국시대에 통일신라·발해 모두 唐나라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唐代의 국가표준공인교재인 『尙書正義』를 포함하는 『五經正義』를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의 교육제도를 통해, 경학으로서의 『尙書』가 이미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1934년 慶尙北道 慶州市 見谷面 金丈里 石丈寺터에서 발견된 壬申誓記石<sup>18)</sup>과 『三國史記』·『三國遺事』에 수록된 薛聰(655년~미상)의 方言 연구<sup>19)</sup>로 재확인할 수 있다.

## 2.2 中世시대

고려시대에도 『尙書』를 비롯한 유가 경전은 국가 교육기관과 과거 시험의 주요 과목으로 편제되어 계속 중시되었다. 특히 고려 초기 太祖(877~943)의 訓要十條 등의 여러 문헌에는 『尙書』의 내용이 들어 있어, 당시 『尙書』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시대 儒學은 成宗 이후로 더욱 발전하여, 睿宗·仁宗 전후로 北宋의 性理學이 전래되면서 經史 중심에서 四書로 이전되었다. 또한 고려 후기 南宋 性理學인 朱子學의 도입으로, 『尙書』 연구는 기존의 唐代 孔穎達의 『尙書正義』에서 宋代 蔡沈의 『書集傳』 중심으로 전환되었다.<sup>20)</sup>

太祖 王建(재위 918~943)은 후삼국 통일 후 고려를 개창하고 민족 융합 정책을 펴나가면서,

17)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년 6월조.

18) 壬申誓記石에는 『詩』·『書』·『禮』·『春秋左傳』을 차례로 습득하되 맹세하기를 3년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壬申誓記石』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19) 『三國史記』 列傳 薛聰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三國遺事』 「元曉不羈」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 중래 薛聰이 吏讀文을 창제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나, 薛聰 이전부터 사용되었다(정인승, “吏讀起原의 再考察,” 『이희승선생충수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1957), 643-652).

20) 恭愍王대 1370년(恭愍王 19) 6월 明나라 황제가 아들들을 책봉하고 과거 시험 준칙을 담은 조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書는 蔡氏傳·古注疏를 채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蔡沈의 書集傳이 孔穎達의 尙書正義보다 앞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로 書集傳이 보다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 말기 과거 시험 과목으로 新注·古注가 나란히 채택된 것으로 보아서, 고려시대 古注인 尙書正義 체제에서 조선시대 新注인 書集傳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간주할 수 있다.

943년(太祖 26) 訓要十條를 자손들에게 남겼다. 이 訓要十條에는 민생 안정과 복진 정책 그리고 儒·佛·仙을 모두 중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고려시대에도 前代를 이어 儒學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후 958년(光宗 9) 光宗(재위 949~975)은 국가 기반 확충과 왕권 안정화를 위해, 後周에서 귀화한 雙冀의 건의를 받아 들여 과거제<sup>21)</sup>를 시행하면서, 유가 경전을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982년(成宗 1) 成宗(재위 981~997)은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에 공감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는데, 이 時務二十八條에는 유학의 이념을 통한 중앙집권국가를 확립하고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려시대 교육기관으로 관학인 國子監(고등 관학)<sup>22)</sup>· 鄕校(중등 관학)<sup>23)</sup>와 사학인 十二公徒(중·고등 사학)<sup>24)</sup>· 書堂(초등 사학)<sup>25)</sup>에

21) 958년(光宗 9) 光宗은 高麗로 귀화한 翰林學士 雙冀의 건의를 받아 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해 실시된 과거에서, 雙冀는 최초의 知貢舉(高麗시대의 과거시험관)가 되었다. 이후 1136년(仁宗 14) 仁宗은 과거 시행법인 과거 절목을 제정하여 과거 제도를 완비하였다. 과거 자격으로는 원칙상 양민 이상이면 모두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승려는 승과 외에는 응시할 수 없었으며, 승려의 자제·친민·행실이 부도덕한 자들은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과거는 크게 製述科(進士科)·明經科(生員科)·雜科(醫卜科)·僧科·武科로 나누어지는데, 武科는 실제로 고려시대에 시행되지 못하였다.

22) 太祖 때 京學 등이 있었는데, 992년(成宗 11) 成宗이 開京에 종래의 國學을 國子監(종합대학의 嚆矢로 國學享祀의 시초)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國子監의 명칭은 1275년(忠烈王 1)에는 國學으로, 1298년(忠烈王 24, 1월부터 8월까지의 忠宣王이 통치한 기간)에는 成均監으로, 1308년(忠宣王)에는 成均館으로, 1356년(恭愍王 5)에는 國子監으로, 1362년(恭愍王 11)에는 成均館으로 변경되었다. 이 國子監은 조선시대 成均館과 같이 文廟·學舍의 기능을 갖추었다. 그리고 1109년(睿宗 4) 睿宗(재위 1105~1122)은 兵亂 및 私學으로 인한 國子監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진흥책으로, 七齋(文武兩學을 전문성에 따라 분류한 7개의 전문 강좌로 儒學 六齋와 武學 一齋로 구성)와 養賢庫(장학 재단)를 설치하였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儒學部(共通先修科目·專攻選擇科目·兼修科目)와 技術部(律學·書學·算學)가 다른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高麗 후기 南宋 性理學이 전래된 이후 經學과 史學이 중시되면서, 國子監은 儒學 전문 교육기관으로 일신하였다. 그래서 1304년(忠烈王 30) 忠烈王(재위 1274~1308)은 安珦의 儒學 진흥책을 받아 들여, 成均館을 신축하고 國學生의 장학기금으로 瞻學錢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308년(忠宣王) 忠宣王(재위 1298, 1308~1313)은 成均館으로 개명하면서 儒學部에 明經學을 설치하고, 종래의 儒學部(國子學·太學·四門學)와 技術部(律學·書學·算學)를 통합하여 七學을 형성하였다. 또한 1389년(恭愍王 1) 恭愍王(재위, 1351~1374)은 國子監에서 技術部를 분리하여 儒學部만 존재하게 하였고, 十學(禮學·樂學·兵學·律學·字學·醫學·風水陰陽學·史學·易學·算學)을 설치하여 十學教授官의 지도 아래 전문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23) 987년(成宗 6) 成宗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十二牧使·經學博士·醫學博士 각 1인씩을 보내어 지방 교육을 관할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鄕校의 시초이다. 鄕校는 지방에 설치된 중등 관학으로, 文廟과 學舍가 있는 國子監의 축소판(文廟·學舍)이었다. 입학 자격은 國子監의 技術部(律學·書學·算學: 문무관 8품 이상의 자제나 서민의 자제)와 동일하였다.

이후 고려후기에 1261년(元宗 2) 元宗이 개성의 동쪽과 서쪽에 東西學堂을 세웠다. 이는 지방의 鄕校에 대한 중앙에 있는 학교로, 文廟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391년(공양왕 3) 鄭夢周(1337~1392)의 건의로 3개의 學堂(開城·남쪽·북쪽)에 五部 學堂으로 증설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1445년(世宗 27) 北部 學堂이 폐지되면서 四學으로 남게 되었다.

24) 高麗에는 私學이 官學보다 더 발달하였는데, 開京에 있던 崔沖의 文憲公徒(1055년(文宗 9)에 설립한 九齋學堂)을 비롯한 12개의 사립학교(十二公徒)가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 수준은 鄕校나 學堂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사설 고등교육기관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九經(『周易』·『尙書』·『毛詩』·『儀禮』·『周禮』·『禮記』·『春秋左氏傳』·『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과 三史(『史記』·『漢書』·『後漢書』) 및 製述을 주로 하였다. 또한 詩賦와 詞章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중 詞章에 중점을 두었다.

十二公徒: 文憲公徒(崔沖)·弘門公徒(鄭倍傑)·匡憲公徒(盧旦)·南山徒(金尙賓)·西園徒(金無滯)·文忠公

서도 『尙書』를 포함한 유가경전이 표준교재로 사용되어, 『尙書』가 계속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3 近世시대

고려 후기에 도입된 朱子學은 조선시대 전체를 풍미하여, 宋代 『書集傳』·明代 『書傳大全』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唐代 『五經正義』의 『尙書正義』를 중시하는 학풍이 여전히 미약하나마 지속되었고,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으로 清代 『十三經注疏』의 『尙書注疏』가 수용되면서, 『尙書正義』 계통과 『書集傳』 계통의 尙書學이 모두 공존하게 되었다.

太祖 李成桂(재위 1392~1398)는 조선을 건국 후 事大主義·排佛崇儒·農本主義를 기본 정책으로 삼았고, 成宗(재위 1469~1494)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과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壬辰倭亂(1592~1598)과 丙子胡亂(1636~1637)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이루어 놓은 정치·경제적 산물들에 대변동이 생기게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여 英祖(재위 1725~1776)·正祖(재위 1776~1800)에 이르러서는 문화가 크게 부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도 前代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유가경전중심의 학문이 계속 되었다. 한편 관학인 成均館(고등 관학)·宗學(고등 관학)·四學(중등 관학)·鄉校(중등 관학)와 사학인 書院(중·고등 사학)·書堂(초등 사학)에서 『尙書』를 비롯한 유가경전이 기본교재로 채택되고 학습되어, 『尙書』의 위상이 계속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3. 국내 尙書類 문헌의 종류와 형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는 이미 고대로부터 『尙書』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尙書』의 주요 注解書인 『尙書正義』가, 고려시대에는 『書集傳』이, 조선시대에는 『書傳大全』·『尙書注疏』가 각기 수용되고 간행·유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注解書들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수용·간행·유통되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이들 注解書들을 근간으로 諺解本도 편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 尙書類 漢文本은 經文만 있는 本·經文에 注釋이나 音釋이 함께 있는 本으로, 國文本은 口訣·釋義(漢文句의 國譯)<sup>26)</sup>·諺解(讀音·口訣·翻譯)로 분류할 수 있다.

徒(殷鼎)·良愼公徒(金義珍 혹은 朴明保)·貞敬公徒(黃瑩)·忠平公徒(柳監)·貞憲公徒(文正)·徐侍郎徒(徐碩)·龜山徒(미상).

25) 高麗의 書堂은 초등교육기관으로, 宋代 徐兢의 高麗圖經에서는 당시 高麗에서는 書堂이 지방에 산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고려시대 전에 이미 출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書堂은 조선시대에 와서 매우 발달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6) 李忠九의 『經書諺解 연구』에서는, 經書口訣로는 鄭夢周의 詩口訣과 權近의 三經口訣과 朴世茂의 書經吐釋과

漢文本은 다시 注解書들의 구성체제와 내용체제를 근거로, 『尙書正義』·『尙書注疏』 계통과 『書集傳』·『書傳大全』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尙書注疏』는 『尙書正義』를 基底로 하여 阮元의 교감기가 더해졌으며, 『書傳大全』은 『書集傳』을 基底로 하여 夏僕의 詳解·陳櫟의 『尙書集傳纂疏』·陳師凱의 『尙書蔡傳旁通』 등이 더해졌다.<sup>27)</sup>

그리고 國文本은 문헌상 鄭夢周·權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韓民族이 한문을 접한 고대로부터 이미 형성되어, 삼국시대에는 薛聰의 鄉札(吏讀)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經書의 諺解사업은 1448년(世宗 30) 3월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불경 諺解처럼 조속히 행해지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이후 世祖代 口訣사업·柳崇祖의 七書諺解·李滉의 經書釋義·柳希春의 詩書釋義·李珥의 四書諺解를 거쳐, 임란을 전후로 비로소 校正廳 經書諺解가 이루어졌고, 구한말에는 詩書의 傳注까지 諺解가 되었다. 이와 같이 經書諺解는 口訣·意譯·釋義·直譯·注譯단계로 점진적으로 성취되었다.<sup>28)</sup>

위와 같이 尙書類 漢文本·國文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간행·유통되었는데, 이때에 대량 유통을 위해 寫本보다는 活字本으로 活字本보다는 木板本으로 간행·유통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간행·유통을 파악하기 위하여, 책판목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국내에서 소장 중인 尙書類 漢文本·國文本을 全數 조사하여, 시대별로 한국본 외에 중국본·일본본 등의 간행·유통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 3.1 책판목록에 따른 수록 현황

책판 목록은 當代 전국 각지에 소장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이다. 현재 전해지는 책판 목록을 통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尙書類 문헌들이 책판으로 제작되고 소장되어 간행·유통된 경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攷事撮要』·『慶尙道冊板』·『諸道冊板錄』·『完營冊板目錄』·『鏤板考』·『各道冊板目錄』·『嶺南各邑校院書冊錄』 등을 조사하여, 총 47가지의 尙書類 문헌의 책판을 파악할 수 있었다.<sup>29)</sup>

梁應鼎의 中庸釋과 趙穆·李珥·崔昱의 周易口訣·李珥의 論語口訣·奇大升의 大學口訣·尹根壽의 四書口訣·宣祖代 經書口訣 등이 있고, 釋義는 朴世茂의 書經吐釋과 梁應鼎의 中庸釋과 尹根壽의 四書吐釋과 李滉의 四書三經釋義와 柳希春의 大學釋義·論語釋疏와 趙穆의 尙書疑義와 李德弘의 四書質疑와 朴世采의 退溪四書質疑疑義 등이 있다고 소개하였다(李忠九, “經書諺解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25-30).

27) 『明史』 『選舉志』에는 洪武년간에 정한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四書는 朱子の 集註를, 易은 程傳·朱子の 易本義를, 書는 蔡沈의 集傳·夏僕의 詳解를, 詩는 朱子の 集傳을, 春秋는 左氏·公羊·穀梁 三傳과 胡安國의 傳과 張洽의 集註를, 禮記는 陳澧의 集說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古注疏를 겸용하였다(李康範, “明代 『五經大全』 纂修의 배경과 經學史的 意義,” 『중국어문학논집』 第74號(2012. 6), 431-457).

28) 李忠九(1990), 12.

29) 각 책판 목록이 시대별로 내용상 차이가 다소 있다. 본고에서는 책판 목록에 대한 서지사항을 별도로 조사·분류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表 2> 책판목록에 따른 수록 현황

지역	시기	1554			1759	1796	1840	
	册板 目錄	攷事撮要	慶尙道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鏤板考	各道册板目錄	嶺南各邑校院書册錄
中央	漢文本					書傳正音 (司譯院)		
	諺解本							
京畿道	漢文本					書傳大全 (北漢), 書集傳 (南漢)	書傳大全 (北漢), 書傳(南漢), 書傳附錄 (南漢)	
	諺解本					書傳諺解 (北漢)	書傳諺解 (北漢)	
忠淸道	漢文本	書傳(公州)						
	諺解本							
全羅道	漢文本	書傳大文 (扶安)/ 書傳(南平)			書傳(長城)/ 書傳(海南)		書傳大全 (全州)	
	諺解本						書傳諺解 (全州)	
慶尙道	漢文本	書大文(榮川) / 尙書(慶州)	書傳 (慶尙道營上), 書大文 (安東)			書傳大全 (嶺南觀察營)	書傳具解 (星州)	書傳·書傳大文(鄉 校), 書傳(西岳鄉校), 書傳·書傳正文(玉 山書院), 書傳參評(三 溪書院), 洪範衍義(虎 溪書院)
	諺解本	諺口尙書 (慶州)	書傳 諺解	三經具諺解 (慶尙道營上)	三經具諺解 (慶尙道營上)	書傳諺解 (嶺南觀察營)		書傳諺解(鄉校), 書傳 諺解(玉山書院), 書傳 諺解(西岳鄉校)
江原道	漢文本							
	諺解本							
黃海道	漢文本							
	諺解本							
平安道	漢文本	書大文 (中和)				書傳大全 (寧邊府), 三經四書講經 (關西觀察營)	書傳具解 (寧邊), 十三經 (寧邊)	
	諺解本					書傳諺解 (寧邊府)		
咸鏡道	漢文本					書傳大全 (關北觀察營)		
	諺解本			書傳 / 書傳諺解 (咸鏡監營)	書諺 (咸鏡道營上), 書傳 (咸鏡道營上)			

- (1) 『攷事撮要』: 1554년(明宗 9)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로서 조선 최초의 도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총 7가지(書傳2·書傳大文·書大文2·尙書·諺口尙書)가 기재되어 있다.
- (2) 『慶尙道冊板』: 경상도의 一道만을 대상으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총 3가지(書傳·書大文·書傳諺解)가 기재되어 있다.
- (3) 『諸道冊板錄』: 1840년(顯宗 6)에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소장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총 3가지(三經具諺解·書傳·書傳諺解)가 기재되어 있다.
- (4) 『完營冊板目錄』: 1759년(英祖 35)에 전라·충청·경상·함경 4도의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총 5가지(書傳3·三經具諺解·書諺)가 기재되어 있다.
- (5) 『鏤板考』: 1796년(正祖 20)에 徐有榘 등이 왕명을 받아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10가지(書傳正音·書傳大全4·書集傳·書傳諺解3 三經四書講經)가 기재되어 있다.
- (6) 『各道冊板目錄』: 1840년(顯宗 6)에 전국에 소장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9가지(書傳大全2·書傳·書傳附錄·書傳諺解2·書傳具解2·十三經)가 기재되어 있다.
- (7) 『嶺南各邑校院書冊錄』: 조선후기 영남 각지의 鄉校·書院·祠堂·書齋 등의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으로, 尙書類 문헌이 10가지(書傳3·書傳大文·書傳正文·書傳參評·洪範衍義·書傳諺解3)가 기재되어 있다.

### 3.2 국내 현존하는 尙書類 문헌

현재 국내에 소장된 尙書類 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및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尙書類 문헌은 주요 經書로서 중앙정부에서 과거시험의 주요 교재로 채택하고 교육하였기에, 그 수량이 매우 많다. 그래서 全數 조사 후에 간행 시기·간행지가 분명한 한국본만 서명별로 재분류한 결과, 지금까지 총 20종이 조사되었다.

書傳大全類(『書傳大全』·『書傳』·『書經』·『書傳正文』·『書經正文』·『書傳大文』·『書經大文』·『書全大文』·『書大文』·『書大全』·『書傳抄』·『書傳正音』)와 書傳諺解類(『書傳諺解』·『書經諺解』·『書傳釋義』)와 기타 類(『御製書傳條問』·『書傳人物類聚』·『御定書傳人物類聚』·『書傳參評』·『洪範衍義』)의 총 20종으로 모두 직간접적으로 『書傳大全』과 관계가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尙書類 문헌 중 주요 문헌으로는 『尙書正義』·『書集傳』·『書傳大全』·『尙書注疏』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이중 한국에서 간행한 현존본으로는 書傳大全類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 이외의 문헌들(尙書正義類·書集傳類·尙書注疏類)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중앙정부에서 『尙書』의 주요 注解書 중, 『書傳大全』만을 국가적으로 정식 注解書로 채택하고 간행·유통을 장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존본 『書傳大全』 중 한국본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世宗代 木板本 『書傳大全』(世宗代 刊印本)·개인 소장본인 戊午字本 『書傳大全』(임진왜란이전 刊印本 부재로, 임진왜란직후 刊印本으로 대체)·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소장된 丁酉字本 『書傳大全』(임진왜란이후 刊印本)과 중국본인 奎章閣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明代 內府刻本 『書傳大全』을 서로 원문서지학적 비교 분석을 하였는데, 제각기 상이함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書集傳』 중 善本으로 알려진 중국본인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宋代 官刻本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蔡氏 『書集傳』이 진상된 후의 첫 번째 刊印本)과도 상이하러,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4. 尙書類 문헌의 원문 서지학적 비교: 『尙書正義』·『尙書注疏』 계통과 『書集傳』·『書傳大全』 계통 간의 비교

唐代 『五經正義』는 이후에 새로운 八經들이 더해져서 十三經이 되었고, 宋代에는 注疏가 善本이 되면서 『十三經注疏』로 간행되었다.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전해지는 本들이 훼손되어, 이를 복원하고자 前代로부터 전해진 문헌들을 고찰하여 清代 阮元이 『十三經注疏』를 새로이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唐代 『五經正義』를 완전히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唐代 『尙書正義』·清代 『尙書注疏』도 역시 크게는 유사점이 많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해지는 唐代 『尙書正義』가 없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본래 清代 『尙書注疏』는 唐代 『尙書正義』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阮元이 교감하기 전에 간행된 明代 『尙書注疏』에 교감기가 더해진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尙書正義』·『尙書注疏』의 계통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宋代 朱子書を 모태로 明代 『四書五經大全』이 형성되었으므로, 宋代 『書集傳』을 기본으로 하여 宋元代 이후의 注解를 더한 明代 『書傳大全』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계통으로 볼 수 있다.

#### 4.1 『尙書正義』·『尙書注疏』의 계통과 『書集傳』·『書傳大全』 계통의 특징

##### 4.1.1 唐代 『尙書正義』·清代 『尙書注疏』 계통

唐代 官撰書로서 『五經正義』는 前代로부터 南北으로 대립되는 經說을 통일하기 위해, 南學을 위주로 하면서 北學도 수용하여 편찬되었다. 『五經正義』가 南學을 위주로 이루어진 데에는, 당시

경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陸德明의 『經典釋文』과 顏師古의 『五經定本』이 南方 출신의 저서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들 經說의 영향을 받아 『五經正義』도 자연스럽게 南學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五經正義』는 구성체제에 있어서 前代의 義疏 형식을 채택하여, 經에 대해 注를 하고, 다시 注에 대하여 疏를 하는 형식으로 편찬되었다. 또한 대체로 注는 南學을 위주로 하고 疏는 南北學으로 하되, 注가 南學의 것이면 가능한 疏는 北學의 것으로 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五經正義』에 있는 『尙書正義』도 이러한 체제로 편찬되었다. 『尙書正義』 「孔穎達序」에 의하면, 隋代 초기에 『孔傳古文尙書』가 河朔에 유입되어, 蔡大寶·巢猗·費昺·顧彪·劉焯·劉炫 등이 「正義」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前代의 經說들을 가지고, 唐代 王德韶·李子雲 등이 정리하여 『尙書正義』를 편찬하였다.<sup>30)</sup>

#### 4.1.2 宋代 『書集傳』·明代 『書傳大全』 계통

宋代 사적편찬서로서 『書集傳』은 朱熹의 제자인 蔡沈이 前代로부터 국가적으로 공인된 注解書인 『尙書正義』를 토대로, 朱熹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가미한 注解書이다. 『五洲衍文長箋叢稿』에 의거하면, 본래 朱熹는 四家の 注를 주로 취하였다.<sup>31)</sup> 그러나 四家 중 王安石은 穿鑿하고, 蘇軾은 簡略하며, 呂祖謙은 考證하고, 林之奇는 煩多하여, 朱熹는 蔡沈으로 하여금 『書集傳』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書集傳』은 蔡沈의 독창적인 注解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四家の 注를 중심으로 朱熹를 비롯한 여러 經說들을 수집·정리하여 集注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30) 蔣伯潛·蔣祖怡(著)/ 崔錫起·姜貞和(譯), 『儒教 經典과 經學』(서울: 景仁文化社, 2002), 372-374; 野間文史, 『五經正義の研究: その成立と展開』(東京: 研文出版, 1998), 전체쪽; 野間文史, 『十三經注疏の研究: その語法と傳承の形』(東京: 研文出版, 2005), 전체쪽.

31) 朱熹는 漢唐의 訓詁學과 宋儒의 義理學의 融合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尙書學을 위해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명하여 문헌을 수집·연구하게 하여, 『文集』·『語類』에는 朱熹가 先秦시대부터 당시까지의 문헌들을 인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朱熹는 『尙書』古注疏(孔傳·陸德明의 『經典釋文』·孔疏)를 위주로 하여, 宋代 諸家の 說(劉敞의 『公是七經小傳』·王安石의 『尙書新義』·程頤의 『書說』과 『二典義』와 『程氏遺書』·蘇軾의 『東坡書傳』·曾鞏의 『書經說』·劉安世의 『尙書解』·晁說之의 『書傳』·陳鵬飛의 『書解』·喻才才·吳才老의 『書禘傳』·林少穎의 『尙書全解』·葉夢得的 『石林書傳』·曾彥和의 『尙書講義』·張九成的 『無垢書說』·鄭樵의 『書辨訛』或 『書考』·袁道洁·鄭敷文的 『書說』·張栻의 『書說』·呂祖謙의 『書說』·陸九淵의 『荊門軍曉論』·李校的 『書說』·葛子平的 『書說』·程大昌의 『禹貢論』)과 經史子集의 방대한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희는 慶元연간에 蔡沈과 서신을 통해, 蔡沈의 『洪範傳』과 『尙書』注解의 원칙을 논하였고, 이후에는 『尙書綱領』으로 『尙書』注解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蔡沈을 자기의 尙書學의 전수자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蔡沈은 朱熹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로부터 『書集傳』에 관하여 상세히 전수받게 되었으나 온전히 전수받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書集傳』에는 朱熹의 학설과 상이한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陳良中, “朱子『尙書』學研究,” (박사학위논문, 華東師範大學 대학원, 2007), 전체쪽; 陳良中, “朱子之論王、蘇、林、呂四家『書』學,” 『求索』 第12期(2007. 12), 218-222.; 陳良中, “朱子與蔡沈『書』學異同考論,” 『重慶師範大學學報』 第3期(2010. 4), 75-81).

이후 元代에 이르러 『書集傳』은 관학이 되어,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元明代에는 蔡沈의 『書集傳』을 중시하는 時義派와 漢唐代의 注疏를 중시하는 古義派로 나뉘게 되었다. 그럼에도 『書集傳』의 위상은 계속 높아져서, 明代에 官撰書인 『五經大全』을 편찬하면서 『書傳大全』의 기본서로 蔡沈의 『書集傳』을 삼고 諸家の 學說을 집대성하였다. 그러나 清代에 이르러서 顧炎武 등이 『四書五經大全』의 표절을 거론하며 비난을 하였는데,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書傳大全』이 陳櫟의 『尙書集傳纂疏』· 陳師凱의 『書蔡傳旁通』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하였다. 그래서 동일한 官撰書로서, 明代 『五經大全』은 唐代 『五經正義』보다는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sup>32)</sup>

#### 4.2 국내에 현존하는 『尙書正義』·『尙書注疏』와 『書集傳』·『書傳大全』 간의 비교

『尙書』 經文에 대해 서로 다른 經說들을 동일하고자, 唐代 『尙書正義』가 국가 공인 注解書로 편찬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尙書正義』에서 채택된 구성체제·내용체제(經文·注釋)를 기본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經說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宋代 『書集傳』도 그 중의 하나였으나, 朱熹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明代에 『書集傳』을 기본으로 한 『書傳大全』이 국가공인 注解書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宋代에 이미 『尙書注疏』가 간행되어, 清代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尙書正義』·『書集傳』 간의 관계는 서로 배치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尙書』를 보다 더욱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였기에, 이들 간의 異同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前代인 조선시대에 朱子學만을 신봉하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의 시도가 없어서, 본고에서는 「虞書」·「夏書」·「商書」만을 가지고 비교 연구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尙書』의 주요 注解書로서, 明本 『尙書註疏』(萬曆15年(1587))· 淸本 『書經』(光緒7年(1881))<sup>33)</sup>· 明本 『書傳大全』(14世紀後半~15世紀初(明初))· 淸本 『附釋音尙書注疏』(同治12(1873))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중 明本 『尙書註疏』는 淸本 『附釋音尙書注疏』와 다르게 교감기가 없고, 실질상 唐本 『尙書正義』와 유사한 宋本 『尙書注疏』를 계승한 것이라는 점에서, 『尙書正義』로 간주할 수 있다. 즉, 宋本 『尙書注疏』는 『五經正義』에 他經들이 첨가되어 『十三經注疏』를 형성한 연유로 ‘正義’에서 ‘注疏’로 명칭만이 변환된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宋本을 이은 明本 『尙書註疏』로 唐本 『尙書正義』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尙書正義』를 대신하여, 明本 『尙書註疏』를 가지고 淸本 『書經(書集傳)』· 明本 『書傳大全』· 淸本 『附釋音尙書注疏』와 異同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32) 何耿鏞(著), 장영백·조관희·김애영·박덕교·전영숙(譯), 『經學概說』(서울: 청아출판사, 1992), 168-169.; 蔣伯潛·蔣祖怡(著)/ 崔錫起·姜貞和(譯), 『儒教 經典과 經學』(서울: 景仁文化社, 2002), 396.

33) 奎章閣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서명을 『尙書蔡傳』이라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卷首題가 『書經』이라고 되어 있어, 『書經』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외에 奎章閣 한국학연구원에는 明版本(1368-1644) 『書』 1冊(卷4) 【古 181.112 C346s】· 『書』 3冊(卷4-6) 【奎中 4192】가 있으나 원문서지학 비교를 위해, 淸本 『書經』을 채택하였다.

4.2.1 구성 체제 비교

현재 奎章閣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중국본인 明本 『尙書註疏』·清本 『書經』·明本 『書傳大全』·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소장된 중국본인 清本 『附釋音尙書注疏』<sup>34)</sup>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구성 체제를 비교하였다.

<圖 1> 『尙書正義』·『尙書注疏』·『書集傳』·『書傳大全』 간의 구성 체제 비교

『尙書註疏』 (『尙書正義』) 明本【奎中 4144】	『書經』(『書集傳』) 清本【奎中 5155】	『書傳大全』 明本【奎中 168】	『附釋音尙書注疏』 (『尙書注疏』) 清本【C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上下單邊左右雙邊半郭, 有界, 9行21字, 上黑魚尾</li> <li>• 印記: 弘文館, 學部圖書, 編輯局保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四周單邊 半郭, 有界, 9行17字, 黑口, 上下向黑魚尾</li> <li>• 印記: 光緒七年(1881)十月金陵書局開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四周雙邊半郭, 有界, 10行22字, 大黑口, 內向黑魚尾</li> <li>• 印記: 李夏坤,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서울大學校圖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左右雙邊半郭, 有界, 10行18字, 上下黑口, 下向黑魚尾</li> <li>• 印記: 李王家圖書之章</li> </ul>
全20卷6册	全6卷4册	全10卷10册	全20卷6册
尙書正義序(孔穎達)	書經集傳序(蔡沈) 書序說(蔡沈集錄: “孔安國曰·孔穎達曰”)	書傳大全凡例 奉勅編輯諸臣職名 書傳大全目錄 引用先儒姓氏 書傳大全圖 書集傳序	尙書正義序(孔穎達)

3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清版本(道光 6(1826)) 『附釋音尙書注疏』 20卷8册 【1320 27A】가 있음을 발견하여, 추후에 원문서지학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尙書註疏』 (『尙書正義』) 明本【奎中 4144】		『書經』(『書集傳』) 淸本【奎中 5155】		『書傳大全』 明本【奎中 168】		『附釋音尙書注疏』 (『尙書注疏』) 淸本【C1-70】			
卷首面		卷首面		卷首面		卷首面			
冊1	卷1	尙書序(孔安國)	冊1	卷1	虞書: 堯典	卷1	虞書: 堯典	卷1	尙書序(孔安國)
	卷2	虞書: 堯典							校勘記序
	卷3	虞書: 舜典		虞書: 舜典	虞書: 舜典	校勘記			
冊2	卷4	虞書: 大禹謨·皋陶謨	冊2	卷2	虞書: 大禹謨·皋陶謨	卷2	虞書: 大禹謨·皋陶謨	卷4	虞書: 大禹謨·皋陶謨
	卷5	虞書: 益稷							虞書: 益稷
	卷6	夏書: 禹貢		夏書: 禹貢	夏書: 禹貢	夏書: 禹貢	校勘記		
冊3	卷8	商書: 湯誓·仲虺之誥·湯誥·伊訓·太甲上中下·咸有一德	冊2	卷2	夏書: 甘誓·五子之歌·胤征	卷3	夏書: 甘誓·五子之歌·胤征	卷7	夏書: 甘誓·五子之歌·胤征
									校勘記
	卷9	商書: 盤庚上中下	冊3	卷3	商書: 湯誓·仲虺之誥·湯誥·伊訓·太甲上中下·咸有一德	卷4	商書: 湯誓·仲虺之誥·湯誥·伊訓·太甲上中下·咸有一德	卷8	商書: 湯誓·仲虺之誥·湯誥·伊訓·太甲上中下·咸有一德
	校勘記								
卷10	商書: 說命上中下·高宗彤日·西伯戡黎·微子	冊3	卷3	商書: 說命上中下·高宗彤日·西伯戡黎·微子	卷5	商書: 說命上中下·高宗彤日·西伯戡黎·微子	卷10	商書: 說命上中下·高宗彤日·西伯戡黎·微子	
校勘記									
卷11	周書: 泰誓上中下·牧書·武成	冊3	卷4	周書: 泰誓上中下·牧書·武成	卷6	周書: 泰誓上中下·牧書·武成	卷11	周書: 泰誓上中下·牧書·武成	
校勘記									
冊4	卷12	周書: 洪範	冊3	卷4	周書: 洪範	卷7	周書: 旅獒·金縢·大誥·微子之命	卷13	周書: 洪範
	卷13	周書: 旅獒·金縢·大誥·微子之命							周書: 旅獒·金縢·大誥·微子之命
	卷14	周書: 康誥·酒誥·梓材							周書: 康誥·酒誥·梓材

『尙書註疏』 (『尙書正義』) 明本【奎中 4144】		『書經』(『書集傳』) 清本【奎中 5155】		『書傳大全』 明本【奎中 168】		『附釋音尙書注疏』 (『尙書注疏』) 清本【C1-70】		
冊5	卷15	周書: 召誥·洛誥	冊4 卷5	周書: 召誥·洛誥	冊8	周書: 召誥·洛誥	卷15	周書: 召誥·洛誥
	卷16	周書: 多士·無逸·君奭		周書: 多士·無逸·君奭		周書: 多士·無逸·君奭	卷16	周書: 多士·無逸·君奭
	卷17	周書: 蔡仲之命		周書: 蔡仲之命		周書: 蔡仲之命	卷17	周書: 蔡仲之命
周書: 多方·立政		周書: 多方·立政	周書: 多方·立政	周書: 多方·立政				
冊6	卷18	周書: 周官·君陳·顧命	冊6	周書: 周官·君陳·顧命	冊9	周書: 周官·君陳·顧命	卷18	周書: 周官·君陳·顧命
	卷19	周書: 康王之誥		周書: 康王之誥		周書: 康王之誥	卷19	周書: 康王之誥
		周書: 畢命·君牙·冏命·呂刑		周書: 畢命·君牙·冏命·呂刑		周書: 畢命·君牙·冏命·呂刑		周書: 畢命·君牙·冏命·呂刑
	卷20	周書: 文侯之命·費誓·秦誓		周書: 文侯之命·費誓·秦誓		冊10	周書: 文侯之命·費誓·秦誓	冊10
尙書序(孔安國)	尙書序(孔安國)	尙書序(孔安國)	尙書序(孔安國)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明本 『尙書註疏』(『尙書正義』)·清本 『書經』(『書集傳』)·明本 『書傳大全』·清本 『附釋音尙書注疏』(『尙書注疏』)의 구성체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明本 『尙書註疏』(『尙書正義』)·清本 『附釋音尙書注疏』(『尙書注疏』)는 卷數(全20卷6冊)·목차·尙書正義序(尙書序)가 있어 동일한 구성을 보였고, 清本 『書經』(『書集傳』)·明本 『書傳大全』은 卷數(全6卷4冊, 全10卷10冊)·목차가 다소 相異하나 書集傳序도 있어 대체로 동일한 구성을 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清本 『附釋音尙書注疏』(『尙書注疏』)는 明本 『尙書註疏』(『尙書正義』)에 校勘記를 가미한 구성체제를, 明本 『書傳大全』은 清本 『書經』(『書集傳』)에 蔡沈 이후의 經說들을 추가한 구성체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볼 때, 明本 『尙書註疏』(『尙書正義』)·清本 『附釋音尙書注疏』(『尙書注疏』)는 동일한 『尙書正義』 계열이고, 清本 『書經』(『書集傳』)·明本 『書傳大全』은 동일한 『書集傳』 계열임을 알 수 있다.

#### 4.2.2 내용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열상 明本 『尙書註疏』·清本 『附釋音尙書注疏』가 동일하고 清本 『書經』·明本 『書傳大全』이 동일하므로, 본고에서 經文 비교에 있어서는 明本 『尙書註疏』와 清本 『書經』만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注解 비교에 있어서는 각 본마다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서,<sup>35)</sup> 조선시

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하는 本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注解 비교를 위하여, 『尙書正義』·『尙書注疏』의 계통인 淸本 『附釋音尙書注疏』와 『書集傳』·『書傳大全』 계통의 조선 丁酉字本 『書傳大全』을 비교하였다. (조선 후기 丁酉字本 『書傳大全』은 현재 대부분 번역서의 底本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注解 비교 대상으로 정하였다.)

『尙書』의 내용이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周書」를 제외한 「虞書」·「夏書」·「商書」에 한해서만 내용 비교를 하되, 대표적인 사례만을 추출하여 연구하였다.

#### 4.2.2.1 經文 비교

明本 『尙書注疏』·淸本 『書經』의 經文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明本 『尙書注疏』는 淸本 『書經』의 經文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淸本 『書經』은 『尙書注疏』의 經文을 일부 변형하거나 생략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前代로부터 전해진 『尙書正義』가 宋代 당시에도 주요 注解書로서 통행된 것에 비해, 당시 『書集傳』은 보조적 注解書의 성격이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을 취하여 나름대로 독창적인 注解를 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추후 경학사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 (1) 변형된 부분

<表 3> 『尙書正義』·『書集傳』 간의 經文 비교(변형된 부분)

書名		『尙書注疏』(『尙書正義』)	『書經』(『書集傳』)
夏書	禹貢	冀州既載	冀州
		壺口治梁及岐	既載壺口
		九州攸同, … 四海會同, 六府孔修.	九州攸同, … 四海會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禹書」의 經文이 『尙書注疏』(『尙書正義』)와 『書經』(『書集傳』)에서 相異하게 나타났다. 經文의 문구는 일치하나 배열방식에 따른 차이로, 經文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5) 김유미의 석사논문 “조선시대 『尙書』의 수용과 간행 연구”에서 『書集傳』·『書傳大全』 간의 내용 비교에서 보듯이 注解 간의 차이가 많아서, 여기서는 조선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한 本으로 注解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2) 생략된 부분

<表 4> 『尙書正義』·『書集傳』 간의 經文 비교(생략된 부분)

書名		『尙書注疏』(『尙書正義』)	『書經』(『書集傳』)
夏書	胤征	自契至于成湯八遷, … 汝方	생략
商書	湯誓	湯既勝夏, … 典寶.	생략
	湯誥	咎單作明居.	생략
	咸有一德	沃丁既葬伊尹于亳, … 作祖乙.	생략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胤征」·「湯誓」·「湯誥」·「咸有一德」의 經文이 『尙書注疏』(『尙書正義』)에는 있으나, 『書經』(『書集傳』)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經文 해석의 有無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尙書』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2.2 注解 비교

唐代 『尙書正義』는 明代 『書傳大全』이 편찬되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아시아에서 주요 注解書로서 공인받았다. 宋代에도 『尙書正義』는 정식 注解書로 사용되어, 朱子를 대신하여 蔡沈이 『書集傳』을 작성할 때에 가장 기본으로 삼은 주요 문헌이었다. 그래서 당시 蔡沈의 『書集傳』을 보면, 기존의 『尙書正義』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朱子が 취한 四家の 注와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볼 때, 蔡沈의 『書集傳』은 『尙書正義』의 注解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일부는 수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적극적인 수용과 반대(거부)의 경우에는 『尙書正義』의 주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으나, 소극적인 수용과 반대의 경우에는 『尙書正義』의 주해를 인용하지 않았다. 적극적 수용의 경우 『尙書正義』의 어구나 문장을 그대로 또는 변형해서 인용하였으나, 『尙書正義』의 漢代 孔安國의 傳·唐代 孔穎達의 疏(正義)의 주해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漢孔氏曰.”·“孔氏云.”·“孔氏以爲.”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傳·疏를 간략히 인용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sup>36)</sup> 이와는 대조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漢代 孔安國의 傳과 唐代 孔穎達의 疏(正義)의 주해와 상반된 자신의 의견만 간단히 제시한 것은 소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明本 『尙書注疏』·清本 『書經』·明本 『書傳大全』·清本 『附釋音尙書注疏』를 비교해 볼 때 注解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와 판본에 따라 注解의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經文(표점참고함)만 明本 『尙書

36) 孔安國의 경우에는 앞에 漢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기도 하여, 해당 經文에서 『尙書正義』의 傳·疏로 孔安國을 의미하는지 孔穎達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註疏』와 淸本 『書經』을 참고하였고, 注解는 조선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행하는 淸本 『附釋音尙書注疏』와 丁酉字本 『書傳大全』을 참고하였다.<sup>37)</sup>

(1) 『尙書正義』의 漢代 孔安國의 傳·唐代 孔穎達의 疏(正義)·宋代 『書集傳』의 蔡沈 注釋의 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 「堯<sup>38)</sup>典<sup>39)</sup>」帝曰, 咨, 汝羲暨和<sup>40)</sup>. 朞<sup>41)</sup>, 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sup>42)</sup>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

<表 5> 『尙書正義』·『書集傳』간의 注解 비교(1)

『尙書正義』	『書集傳』
<p>【經文解釋】帝堯가 이르시기를 “자! 자네들 羲氏와 和氏야. 朞는 366일이니, 윤달로써야 四時를 정하고 歲歷을 이루어서 &lt;시기를 고하여 일을 알려주면&gt;, 진실로 백관을 다스리게 되어 여러 功績이 다 넓혀질 것이다.”</p>	<p>朞, 嗟也 嗟歎而告之也. 暨, 及也. 朞, 猶周也. 允, 信. 釐, 治. 工, 官. 庶, 衆. 績, 功. 咸, 皆. 熙, 廣也. … 其名實乖戾, 寒暑反易, 農桑庶務, 皆失其時. 故必以此餘日, 置閏月於其間然後, 四時不差而歲功得成, 以此, 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 (咨는 嗟歎[感歎]함이니, 차탄하면서 고하는 것이다. 暨는 及[및, 與의 의미]이다. 朞는 1주년과 같다. 允은 信實함이고, 釐는 統治함이며, 工은 官吏이고, 庶는 衆(여러)이며, 績은 功績이고, 咸은 皆(모두)이며, 熙는 廣大함(넓힘)이다. … 그 명칭과 실체가 괴리되고 주위와 더위가 반대로 바뀌어, 농사일과 뽕나무 가꾸는 여러 업무가 모두 그 계절을</p>
<p>【傳】咨, 嗟. 暨, 與也. 匝四時曰朞. 一歲十二月, 月三十日, 正三百六十日. … 未盈三歲足得一月, 則置閏焉, 以定四時之氣節, 成一歲之歷象. …</p> <p>(咨는 嗟歎함이고, 暨는 與[및]이다. 四時를 한 바퀴 도는 것은 朞(돈)라고 이른다. 한 해가 12개월이고, 한 달이 30일이니, 정확히 360일이다. … 3년이 차기 전에 죽히 한달을 얻으면 윤달을 두어서 四時의 절기를 정하고 1년의 曆象을 이른다. …)</p> <p>允, 信. 釐, 治. 工, 官. 績, 功. 咸, 皆. 熙, 廣也. 言定四時成歲歷, 以告時授事, 則能信治百官, 衆功皆廣, 歎其善. ……</p>	<p>咨, 嗟也 嗟歎而告之也. 暨, 及也. 朞, 猶周也. 允, 信. 釐, 治. 工, 官. 庶, 衆. 績, 功. 咸, 皆. 熙, 廣也. … 其名實乖戾, 寒暑反易, 農桑庶務, 皆失其時. 故必以此餘日, 置閏月於其間然後, 四時不差而歲功得成, 以此, 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 (咨는 嗟歎[感歎]함이니, 차탄하면서 고하는 것이다. 暨는 及[및, 與의 의미]이다. 朞는 1주년과 같다. 允은 信實함이고, 釐는 統治함이며, 工은 官吏이고, 庶는 衆(여러)이며, 績은 功績이고, 咸은 皆(모두)이며, 熙는 廣大함(넓힘)이다. … 그 명칭과 실체가 괴리되고 주위와 더위가 반대로 바뀌어, 농사일과 뽕나무 가꾸는 여러 업무가 모두 그 계절을</p>

37) 『尙書正義』·『書集傳』의 注解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편찬한 『尙書正義』·『書經集傳』을 참고하였다.

38) 堯: 諡法을 상고하건대, “翼善傳聖(善行을 輔翼하고 聖人에게 傳位함)은 堯라고 이르고, ‘仁義盛明’은 舜이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 이로써 ‘堯舜’은 號라고 이르기에도 하고 諡라고도 이른다(諡法은 三皇五帝에 존재했다는 說과, 周代에 제정되었다는 說이 있다). [《正義》案諡法“翼善傳聖曰堯, 仁義盛明曰舜.” … 《正義》以此堯舜或云號, 或云諡也.)

\* 名號: 명칭과 호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姓·名·字·號를 비롯한 皇帝가 사용한 年號·諡號·廟號 등이 있다. 한편 『帝繫』·『世本』에서는 모두 이르기를, “黃帝는 玄囂를 낳았고, 玄囂는 僑極을 낳았으며, 僑極은 帝嚳을 낳았고, 帝嚳은 堯를 낳았다.”라고 하였다. [《正義》帝繫及世本皆云, “黃帝生玄囂, 玄囂生僑極, 僑極生帝嚳, 帝嚳生堯.”]

39) 典: 고대의 公文體制로서, 표준과 법칙(常道)을 의미한다. 『爾雅』『釋言』에서는 “典은 經이다. [典, 經也.]”라 하고, 『說文』에서는 “典은 五帝의 書이다. [典, 五帝之書也.]”하며, 『左傳』『昭公十二年』에서는 “이는 三墳·五典·八索·九丘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是能讀三墳五典八索九丘.]”라고 하였다.

40) 汝羲暨和: 重(少昊의 후손)·黎(高陽의 후손)의 후손인 羲氏와 和氏는 대대로 天地와 四時를 관장하는 官吏이었다.

41) 朞: 四時를 한 바퀴 두르는 것은 朞라고 이른다. [《傳》匝四時曰朞.]

42) 以閏月定四時, 成歲.: 작은 달 여섯 개의 날을 제거하면 6일이 되므로, 이것이 1년에 12일이 남음이 있게 되는 것이니, 미처 3년을 채우지 못한 채에 죽히 한 달을 얻으면, 윤달을 두게 되니, 四時의 절기를 정함으로써, 1년의 曆象을 작성하게 된다. [《傳》除小月六, 爲六日, 是爲一歲有餘十二日, 未盈三歲足得一月, 則置閏焉, 以定四時之氣節, 成一歲之歷象.]

<p>(允은 信實함이고, 釐는 治理함이며, 工은 官吏이고, 績은 功績이며, 咸은 皆(모두)이고, 熙는 廣大함(넓음)이다. 四時를 정하고 歲曆을 이루어서 시기를 고하여 일을 알려주면, 진실로 百官을 다스릴 수 있어 여러 공적들이 모두 넓혀지게 됨을 말하였으니, 그 좋은 점을 탄미하였다. …….)</p>	
<p>【疏】… 羲和所掌如是, 故帝堯乃述而歎之曰 “咨嗟, 汝羲仲, 羲叔與和仲, 和叔. 一葦之間, 三百有六旬有六日, … 若以閏月補闕, 令氣朔得正, 定四時之氣節, 成一歲之歷象, 是汝之美可歎也. 又以此歲歷告時授事, 信能和治百官, 使之衆功皆廣也.” 歎美羲和能敬天之節, 衆功皆廣, 則是風俗大和. …….</p> <p>(“… 羲氏와 和氏가 관장하는 바가 이와 같으므로, 帝堯가 이에 슬회하고 탄미하여 이르기를 “아아! 자네들 羲仲·羲叔과 和仲·和叔아. 1년간은 366일인데, … 만약 윤달로 빠진데를 보충하여 氣朔(해와 달의 운행 도수)으로 올바름을 얻게 한다면, 四時의 절기를 정하여 한 해의 曆象을 이루게 되니, 이는 자네들의 아름다움이 탄미할 만한 자네의 아름다운 점이다. 또 이 歲曆을 가지고 시기를 고하고 일을 알려주면, 진실로 百官을 화합되게 다스릴 수 있어서 여러 공적들이 모두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였다. 羲氏와 和氏가 하늘의 절기를 공경히 할 수 있어, 여러 공적들이 모두 넓혀지게 됨을 탄미하였으니, 이는 풍속이 크게 화합됨이다. …….)</p>	<p>없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여분의 날을 가지고 그 사이에 윤달을 둔 연후에야, 사철이 어그러지지 않고 한 해의 功業이 성취될 수 있으니, 이로써 진실로 백관이 다스려지고 못 공적이 모두 넓혀진다.)</p>

(2) 『尙書正義』의 漢代 孔安國의 傳과 唐代 孔穎達의 疏(正義)는 동일하나, 宋代 『書集傳』의 蔡沈 注釋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堯典」曰若稽古帝堯, 曰放勳<sup>43)</sup>, 欽明<sup>44)</sup>文思安安, 允恭<sup>45)</sup>克讓<sup>46)</sup>, 光被四表, 格于上下.<sup>47)</sup>

43) 放勳: 孔安國은 『論語』의 “曰予小子履.”에 주해하여 이르기를 “履는 殷湯의 이름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湯의 이름은 履이나 湯은 이름이 아니다. 또 여기에서 “堯·舜은 이름이다.”라고 이르지 않았으니, 堯 및 舜·禹도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명백한 것이다. 이미 이름이 아니어서, 放勳·重華·文命이 대개 三王의 이름으로 여긴 듯하니 鄭玄과 동일한 것이다. [《正義》孔注論語 “曰予小子履.”云 “履是殷湯名.”, 是湯名履, 而湯非名也. 又此不云堯舜是名, 則堯及舜禹非名, 于是明矣. 既非名, 而放勳重華文命蓋以爲三王之名, 同于鄭玄矣.]

44) 明: 지혜가 심히 明哲하다. [《疏》智惠甚明.] ; 朱子는 聰明이라고 하였다.[聰明.]

45) 恭: 恭遜히 勤勉함이다. [《疏》恭勤.]

46) 讓: 謙讓함이다. [《疏》謙讓.]

47) 『尙書正義』에서는 이 經文의 의미를 堯德(四德: 欽明文思)·堯行(施行: 允恭克讓)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에 “安安”은 “安天下之當安者”(천하에 마땅히 편안히 해야 할 자들을 편안히 함)라고 하여, 身·家(九族)·國(百姓)·天下(萬邦)로 설명하였다. 또한 『尙書正義』의 전체적 의미로 볼 때에, 이는 身(士, 修養)·家(卿大夫, 整齊)·國(諸侯, 通治)·天下(天子, 平和)라고 생각할 수 있다.

<表 6> 『尙書正義』·『書集傳』 간의 注解 비교(2)

『尙書正義』	『書集傳』
<p>【經文解釋】(傳/疏)</p>	
<p>古道를 따라 稽考[詳考]한 분은 帝堯라고 이르는데, ‘放勳(上世의 功勳을 본받음)’이라고 일컬어지셨으니, 欽敬·明哲·文謀·思慮로 편안히 할 것에 편안히 하시며, 信實·恭勤·善能·謙讓하시어, 光明이 四外[四方]를 덮어 天地에 까지 이르렀다.</p>	<p>이에 古代 帝堯를 稽考하건대, “放勳(功勳을 &lt;天地에&gt; 이르기까지 널리 났다.)”이라고 일컬어지셨으니, 欽敬하면서 聰明하고 文章[文彩]이 있으면서 思慮있되 편안히 하셨으며, 信實하면서 恭勤하고 善能하면서 謙讓하시어, 光明이 四外에 입혀져 天地에까지 이르렀다.</p>
<p>【傳】若, 順, 稽, 考也. 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 (若은 順應함이고, 稽는 稽考함이니, 古道를 따라 계고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帝堯이시다. …) 勳, 功, 欽, 敬也. 言堯放上世之功, 化而以敬明文思之四德, 安天下之當安者. … (勳은 功勳이고 欽은 欽敬함이니, 帝堯가 上世의 功勳을 본받아 教化하되 欽敬·明哲·文謀·思慮의 四德을 가지고 천하의 응당 편안해야 할 것을 편안히 하였음을 말하였다. …) 允, 信, 克, 能, 光, 充, 格, 至也. 既有四德, 又信恭能讓, 故其名聞, 充溢四外, 至于天地 …… (允은 信實함이고, 克은 可能함(할 수 있음)이며, 光은 充滿함이고, 格은 至(이름)이다. 이미 四德을 소유하였고 또 信實하고 恭勤하고 善能하고 謙讓하였다. 그러므로 그 名聞이 四外에 充溢하고 天地에 이르렀다.)</p>	<p>曰, 粵, 越通, 古文作粵. 曰若者 發語辭, 周書越若來三月, 亦此例也. 稽, 考也. 史臣將敘堯事, 故先言考古之帝堯者, 其德, 如下文所云也. 曰者, 猶言其說如此也. 放, 至也. 猶孟子言放乎四海是也. 勳, 功也, 言堯之功夫大而無所不至也. 欽, 恭敬也. 明, 通明也, 敬體而明用也. 文, 文章也. 思, 意思也, 文著見而思深遠也. 安安, 無所勉強也, 言其德性之美, 皆出於自然, 而非勉強, 所謂性之者也. 允, 信. 克, 能也. 常人德非性有, 物欲害之. 故有強爲恭而不實, 欲爲讓而不能者, 惟堯性之. 是以, 信恭而能讓也. 光, 顯. 被, 及. 表, 外. 格, 至. 上, 天. 下, 地也. 言其德之盛如此, 故其所及之遠如此也. 蓋放勳者, 總言堯之德業也. 欽明文思安安, 本其德性而言也. 允恭克讓, 以其行實而言也. 至於被四表格上下, 則放勳之所極也. 孔子曰, 惟天爲大, 惟堯則之. 故書敘帝王之德, 莫盛於堯, 而其贊堯之德, 莫備於此, 且又首以欽之一字爲言, 此書中開卷第一義也. 讀者深味而有得焉, 則一經之全體, 不外是矣. 其可忽哉.</p>
<p>【疏】史將述堯之美, 故爲題目之辭曰, “能順考校古道而行之者, 是帝堯也.” 又申其順考古道之事曰, “此帝堯能放效上世之功而施其教化, 心意恒敬, 智慧甚明, 發舉則有文謀, 思慮則能通敏, 以此四德安天下之當安者. 在於己身則有此四德, 其於外接物, 又能信實恭勤善能謙讓. 恭則人不敢侮, 讓則人莫與爭, 由此爲下所服, 名譽著聞, 聖德美名, 充滿被溢於四方之外, 又至于上天下地.” 言其日月所照, 霜露所墜, 莫不聞其聲名, 被其恩澤. 此即稽古之事也. …… (史官이 장차 堯의 아름다움을 기술하려고 하였으므로, 題目의 말을 만들어서 이르기를 “古道를 따라 계고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帝堯이시다.”라고 하고, 또 그 古道를 따라 계고한 일을 거듭해서 이르기를 “이러한 帝堯가 上世의 功勳을 본받아서 그 教化를 시행하시되, 心意는 항상 경건하고, 智慧는 심히 명철하며, 거동하면 文謀가 있으시고, 思慮하면 通敏에 능하셨으니, 이 四德으로 天下의 응당 편안해야 할 것을 편안히 하셨다. 자신에 있어서는 이 四德을 소유하시고, 그 밖으로 사물을 접함에 있어서는 또 信實하고 恭勤하고 善能하고 謙讓하시는데 능하셨다. 공손하면 사람들이 감히 모욕하지 못하고, 겸양하면 사람들이 더불어 쟁론하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아래사람들이 심복하게 되니, 名譽가 드러나 알려져서 聖德과 美名이</p>	<p>(曰은 粵·越과 통하는 것이다. 『古文尙書』에는 粵로 되어 있다. 曰若이란 發語辭이니, 『周書 召誥』의 ‘잇달은 3月[于順來三月]’이란 것이 역시 이러한 예이다. 稽는 稽考함이다. 史臣이 장차 帝堯의 事蹟을 서술하려고 하였으므로, 우선 말하기를 “고대의 帝堯라는 분을 고찰하건대, 그 德이 下文에 이른 바와 같다.”라고 하였다. 曰이란 ‘그 說이 이와 같음을 말한다.’는 것과 같다. 放은 至(이름)이니, 孟子께서 말씀하신 “四海에 이른다.”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勳은 功勳이니, 帝堯의 공훈이 상대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음을 말하였다. 欽은 恭敬함이고 明은 通敏하면서 明敏함이니, 敬은 體이고 明은 用이다. 文은 文章[文彩]이고 思는 意見(생각)이니, 문체가 드러나고 생각이 심원함이다. 安安은 힘써 억지로 하는 바가 없음이니, 그 德性의 아름다움이 모두 자연스러움에서 나오고 힘써 억지로 함이 아님을 말한 것이니, 이른바 ‘本性대로 하는 것’이다. 允은 信實함이고, 克은 能함이다. 평범한 사람은 德이 本性대로 보유되지 아니하여, 物欲으로 그것을 해친다. 그러므로 억지로 공손을 행하나 성실하지 못하고, 겸양을 행하고자 하나 능하지 못하는 것이니, 오직 帝堯만이 本性대로 하였다. 이 때문에 신실하게 공손하면서 능히 겸양하였다. 光은 顯明함이고, 被는 波及됨(미침)이고, 表는 外面이고, 格은 至(이름)이</p>

『尙書正義』	『書集傳』
<p>충만하여 四方 밖에 넘치고, 또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그 해와 달이 비치는 바와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바에 그 名聲을 듣고 그 恩澤을 입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 것이니, 이는 곧 古道를 계고하신 일이다. …….)</p>	<p>고, 上은 하늘이고, 下는 땅이다. 그 德의 盛大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 미친 바가 遠大함이 이와 같음을 말하였다. 대개 放勳이란 帝堯의 德業을 총괄해서 말한 것이고, 欽明文思安安은 그 德性에 근본해서 말한 것이고, 允恭克讓은 그 行실로써 말한 것이다. 被四表格上下에 이르러서는, 공훈을 널리 펼침이 지극한 바이다. 孔子께서 이르시기를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신데, 오직 帝堯만이 그것을 본받으셨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書經』에서 帝王의 德을 서술한 것이 帝堯보다 盛大한 이가 없고, 그 帝堯의 德을 찬미함이 이보다 구비된 것이 없다. 게다가 또 서두에서 欽의 한 문자를 가지고 말을 삼았으니, 이 책 중에서 卷을 시작하는 第一의 意義이다. 독자는 심히 음미하여 特득함이 있으면, 『書經』의 전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p>

(3) 唐代 孔穎達의 疏(正義)·宋代 『書集傳』의 蔡沈 注釋은 동일하나, 漢代 孔安國의 傳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甘<sup>48)</sup>誓<sup>49)</sup>」用命, 賞于祖. 不用命, 戮于社<sup>50)</sup>, 予則孥戮汝.<sup>51)</sup>

<表 7> 『尙書正義』·『書集傳』간의 注解 비교(3)

『尙書正義』		『書集傳』
【經文解釋】(傳/疏)		<p>&lt;天子가 親征할 적에는 반드시 遷廟한 조상의 神主[牌位]를 齊車(齋戒시에 사용되는 수레)에 적재하고 행차하여,&gt; 명령을 행하는 이는 조상의 &lt;神主 앞에서&gt; 상을 내리고, &lt;天子가 親征할 적에는 반드시 社稷(土地神)의 神主를 적재하고 행차하여,&gt; 명령을 행하지 않고 &lt;軍陣을 등지고 敗走하는 이는&gt; 社稷의 &lt;神主 앞에서&gt; 살륙하되, 내가 그렇다면 &lt;네&gt; 자식까지 너와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p>
<p>…; 내가 그렇다면 &lt;네&gt; 자식까지 너와 恥辱되게 할 것이다.</p>	<p>…; 내가 그렇다면 &lt;네&gt; 자식을 &lt;아울러 죽여&gt; 너를 殺戮되는 恥辱을 받게 할 것이다.</p>	

48) 啓(禹의 아들)가 有扈와 더불어 甘의 原野에서 전쟁을 하였다. <史官이> 「甘誓」를 지었다. 『尙書正義』 啓與有扈戰于甘之野, 作甘誓.]

正義曰: 『漢書』 『地理志』에 “扶風 郿縣은 고대의 扈國이니, 夏나라 啓가 정벌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郿와 扈는 音이 동일한데, 어느 시기에 개정된 지는 미처 알 수 없다. [地理志 “扶風郿縣, 古扈國, 夏啓所伐者也.” 郿扈音同, 未知何時改也.]

49) 『禮記』 『曲禮』에 이르기를 “誠信으로 盟約하는 것은 誓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장차 敵과 전쟁을 하려는데 그 손해와 패배를 걱정하여 將士들과 서약을 세워 賞罰의 信義를 시사하였다. 장차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는 誓戒가 誓戒의 중대한 것이다. 禮에서 장차 제사지내려고 하면서 호령하여 百官을 정제함도 역시 誓戒라고 일컬었다. [《正義》 曲禮云 “約信曰誓.” 將與敵戰, 恐其損敗, 與將士設約, 示賞罰之信也. 將戰而誓, 是誓之大者. 禮將祭而號令齊百官, 亦謂之誓.”]

50) 祖社: 『禮』에 宗廟는 左邊에, 社稷은 右邊에 있게 하였으니, 이는 祖는 陽이고 社는 陰이기 때문이다. [《正義》 禮左宗廟, 右社稷, 是祖陽而社陰.]

51) 予則孥戮汝.: 孔傳·孔疏가 지시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尙書正義』	『書集傳』
<p>【傳】… 孥, 子也. 非但止汝身, 辱及汝子. 言恥累也. ……                  (… 孥는 子息이다. 단지 네 몸에만 그칠 뿐만 아니라 육이 네 자식에게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니, 恥累(恥辱)를 말함이다. …….)</p>	<p>戮, 殺也. 禮曰, 天子巡狩, 以遷廟主行. 左傳, 軍行, 祓社戮鼓. 然則天子親征, 必載其遷廟之主, 與其社主以行, 以示賞戮之不敢專也. 祖, 左, 陽也, 故賞于祖. 社, 右, 陰也, 故戮于社. 孥, 子也, 孥戮, 與上戮字同義. 言若不用命, 不但戮及汝身, 將併汝妻子而戮之. 戰, 危事也. 不重其法, 則無以整肅其衆而使赴功也. 或曰, 戮, 辱也. 孥戮, 猶秋官司厲, 孥男子以爲罪隸之孥. 古人以辱爲戮, 謂戮辱之, 以爲孥耳. 古者, 罰弗及嗣, 孥戮之刑, 非三代之所宜有也. 按此說, 固爲有理. 然以上句考之, 不應一戮而二義. 蓋罰弗及嗣者, 常刑也. 予則孥戮者, 非常刑也. 常刑則愛克厥威, 非常刑則威克厥愛. 盤庚遷都, 尙有剝殄滅之無遺育之語, 則啓之誓師, 豈爲過哉.                  (戮은 殺戮함이다. 『禮』에 이르기를 “天子가 巡狩하는데, 遷廟한 社主를 가지고 行차한다.” 하였고 『左傳』에 “군대가 出行하는데, 社에서 &lt;祓社祀를 하고&gt; 북에 &lt;피를 칠한다.&gt;” 하였으니, 그렇다면 天子가 親征하는데 반드시 그 遷廟한 社主와 그 社의 社主를 적재함은, 賞戮을 감히 전횡하지 않음을 示唆한다. 祖는 左邊에 있으니 陽이므로 조상의 &lt;社主 앞에서&gt; 상주고, 社는 右邊에 있으니 陰이므로 社의 &lt;社主 앞에서&gt; 죽인다. 孥는 子息이니, 孥戮은 上文의 戮字와 意義가 동일하다. “만약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만 죽음이 네 신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장차 너의 처자까지 아울러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쟁은 위태로운 일이니, 그 법을 중요시 하지 않으면 그 무리를 정돈하고 엄숙히 하여 공훈에 나아가게 할 방법이 없다. 후자는 이르기를 “戮은 辱되게 함이니, 孥戮은 &lt;秋官&gt;의 司厲에 남자를 종으로 하여 罪隸로 삼는다는 孥와 같다. 고대 사람들은 辱을 戮이라 하였으니, 恥辱을 주어서 노예로 삼음을 이를 뿐이다. 고대에 형벌이 嗣子에게 미치지 않았으니, 처자까지 죽이는 형벌은 三代에 의당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살펴보건대, 이 說이 진실로 이치가 있게 여겨진다. 그러나 上句로 고찰하건대, 응당 하나의 戮字에 두 意義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형벌이 嗣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평상시의 형벌이고, 내가 너의 처자까지 죽인다는 것은 평상시의 형벌이 아니다. 평상시의 형벌은 사랑이 그 위엄을 이기고, 비상시의 형벌은 위엄이 그 사랑을 이긴다. 盤庚이 遷都하는데 오히려 “&lt;죄가 작은 경우는&gt;코를 베고 &lt;죄가 큰 경우는&gt;殄滅하여 遺族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啓가 군사들에게 맹세함이 어찌 과하다고 하겠는가.)</p>
<p>【疏】… 汝等若用我命, 我則賞之於祖主之前. 若不用我命, 則戮之於社主之前. 所戮者非但止汝身而已, 我則并殺汝子以戮辱汝. 汝等不可不用我命以求殺敵. 戒之使齊力戰也. ……                  (너희가 만약 나의 명령을 행한다면 나는 조상의 社主 앞에서 상줄 것이고, 만약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社(土神)의 신주 앞에서 욕되게 할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은 단지 너의 몸에 그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울러 너의 자식까지 살륙해서 너를 욕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 적을 죽이기를 구하지 아니해서는 불가하다.’ 라고 하였으니, 그들을 경계하여 일제히 힘써 전쟁하게 했다.”라고 하였다. …….)</p>	<p>(戮은 殺戮함이다. 『禮』에 이르기를 “天子가 巡狩하는데, 遷廟한 社主를 가지고 行차한다.” 하였고 『左傳』에 “군대가 出行하는데, 社에서 &lt;祓社祀를 하고&gt; 북에 &lt;피를 칠한다.&gt;” 하였으니, 그렇다면 天子가 親征하는데 반드시 그 遷廟한 社主와 그 社의 社主를 적재함은, 賞戮을 감히 전횡하지 않음을 示唆한다. 祖는 左邊에 있으니 陽이므로 조상의 &lt;社主 앞에서&gt; 상주고, 社는 右邊에 있으니 陰이므로 社의 &lt;社主 앞에서&gt; 죽인다. 孥는 子息이니, 孥戮은 上文의 戮字와 意義가 동일하다. “만약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만 죽음이 네 신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장차 너의 처자까지 아울러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쟁은 위태로운 일이니, 그 법을 중요시 하지 않으면 그 무리를 정돈하고 엄숙히 하여 공훈에 나아가게 할 방법이 없다. 후자는 이르기를 “戮은 辱되게 함이니, 孥戮은 &lt;秋官&gt;의 司厲에 남자를 종으로 하여 罪隸로 삼는다는 孥와 같다. 고대 사람들은 辱을 戮이라 하였으니, 恥辱을 주어서 노예로 삼음을 이를 뿐이다. 고대에 형벌이 嗣子에게 미치지 않았으니, 처자까지 죽이는 형벌은 三代에 의당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살펴보건대, 이 說이 진실로 이치가 있게 여겨진다. 그러나 上句로 고찰하건대, 응당 하나의 戮字에 두 意義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형벌이 嗣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평상시의 형벌이고, 내가 너의 처자까지 죽인다는 것은 평상시의 형벌이 아니다. 평상시의 형벌은 사랑이 그 위엄을 이기고, 비상시의 형벌은 위엄이 그 사랑을 이긴다. 盤庚이 遷都하는데 오히려 “&lt;죄가 작은 경우는&gt;코를 베고 &lt;죄가 큰 경우는&gt;殄滅하여 遺族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啓가 군사들에게 맹세함이 어찌 과하다고 하겠는가.)</p>

(4) 漢代 孔安國의 傳과 宋代 『書集傳』의 蔡沈 注釋은 동일하나, 唐代 孔穎達의 疏(正義)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尙書』의 내용(특히 『尙書正義』)이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虞書』·『夏書』·『商書』에 한해서만 비교를 하였기에, 『周書』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 계속 『尙書正義』·『書集傳』 간의 비교를 행하여, 해당사항의 有無를 알아보도록 하겠다.<sup>52)</sup>

- (5) 『尙書正義』의 漢代 孔安國의 傳·唐代 孔穎達의 疏(正義)·宋代 『書集傳』의 蔡沈 注釋의 의미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湯誓<sup>53)</sup>」 今汝其曰, 夏罪其如台.<sup>54)</sup> 夏王率遏衆力, 率割夏邑.<sup>55)</sup> 有衆率怠弗協, 曰, 時日曷喪, 予及汝皆亡. 夏德若茲, 今朕必往.

<表 8> 『尙書正義』·『書集傳』간의 注解 비교(4)

『尙書正義』		『書集傳』
【經文解釋】(傳/疏)		지금 너희들은 그 이르기를 ‘夏王의 죄가 있더라도 그 내가 어찌하겠는가.’라고 할 것이니, 夏王이 <신하들과> 통솔하여 <勞役으로> 민중의 힘을 단절시키며, 통솔하여 夏나라의 도읍을 割削하고 있다. 민중들은 <서로> 거느려서 태만해져서 <윗사람과 더불어> 和合하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이 해는 언제 喪失될고? <만약 상실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와 모두 망실 것이다’라고 하니, 夏나라의 凶德이 이와 같다. 이제 朕이 반드시 가서 <誅罰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 이른 夏王의 죄가 其實은 내가 <들은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니, ……	지금 너희들이 그 이른 夏王의 죄가 其實은 내가 <말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니, ……	
【傳】… 今汝其復言桀惡, 其亦如我所聞之言. …… (… 지금 너희들이 그 말한 桀의 惡은 그 역시 내가 들은 바의 말과 같다고 할 것이다 ……)		遏, 絕也. 割, 剗割夏邑之割. 時, 是也. 湯 又舉商衆言, 桀雖暴虐, 其如我何. 湯又應之曰, 夏王, 率爲重役, 以窮民力, 嚴刑, 以殘民生, 民厭夏德, 亦率皆怠於奉上, 不和於國, 疾視其君, 指日而曰, 是日, 何時而亡乎. 若亡則吾寧與之俱亡, 蓋苦桀之虐, 而欲其亡之甚也. 桀之惡德如此, 今我之所以必往也. 桀嘗自言, 吾有天下, 如天之有日, 日亡, 吾乃亡耳. 故民因以日目之. (遏은 斷絶함이고, 割은 剗割夏邑의 割이다. 時는 이것이다. 湯王이 또한 商나라 무리들의 말에 “桀王이 비록 포악하나 그 내가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고, 湯왕이 또다시 그것에 대응하여 말씀하기를 “夏나라 王이 통솔하여 勞役을 무겁게 하여 백성들의 힘을 궁핍하게 하고 형벌을 엄격히 하여 민생을 잔혹하게 하니, 백성들이 夏나라의 德에 염증이 나서 역시 경솔하게 모두 윗사람을 받들며 태만하고 국가에 和合하지 않아 그 君主를 질시하여 해를 지시하며 이르기를 ‘이 해는 어느 때에 망실될까? 만약 망실된다면, 내 차라리 그것과 더불어 함께 망실되겠다.’라고 하니, 아마도 桀王의 虐政에 고통스러워 그 멸망하고자 함이 심한 듯하다. 桀王의 惡德이 이와 같으니, 지금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까닭이다.” 하였다. 桀王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天下를 소유함은 하늘이 해를 소유함과 같으니, 해가 망실되어야 나도 마침내 멸망할 뿐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인하여 해로 그를 지목하였다.)
【疏】… 今汝衆人其必言曰 夏王之罪, 其實如我所言. …… (… 지금 너희들이 그 필시 말하여 이른 夏나라 왕의 죄는 그 실제로 내가 말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		

52) 추후 宋代 『書集傳』·明代 『書集大全』 등 다양한 본을 가지고 字句마다 비교할 필요가 있다.

53) 湯王의 衆士들에게 誓戒한 것이다. [《傳》 戒誓湯士衆.]

54) 今汝其曰, 夏罪 其如台.: 孔傳·孔疏가 지시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5) 夏王率遏衆力, 率割夏邑.: 桀의 君臣이 서로 거느리고 勞役의 일을 시행하여 민중의 힘을 단절시키니, 농사일을 폐기함을 이른다. 서로 거느려서 夏나라의 도읍에서 割削의 <政事를> 하니, 征稅와 賦役이 과중함을 이른다. [《傳》 “桀君臣相率爲勞役之事以絕衆力, 謂廢農功. 相率割削夏之邑居, 謂征賦重.”]

위와 같이 前代로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尙書正義』는 국가에서 공인된 주요 注解書였고 『書集傳』은 저명한 一家의 注解書였으나, 이후 朱子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元代에 관학에 편입되었고 明代에는 『書集傳』의 계통인 『書傳大全』으로 편찬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러한 『書傳大全』이 수용되어 중앙정부 주도로 간행·보급되면서, 점차 『尙書正義』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書集傳』만 주로 보고 『尙書正義』를 전혀 참고하지 않아 經文의 일부 해석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보다 나은 『書集傳』 연구를 위해서는, 『尙書正義』와 병행해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 론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尙書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春秋 말기에 전해진 『尙書』의 原本을, 孔子가 정리하고 刪定하여 대략 120餘篇으로 만든 本인데, 안타깝게도 일찍이 失傳되어 고증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西漢 文帝 때 伏勝이 전한 今文尙書本으로, 秦始皇의 焚書와 項羽의 咸陽宮 放火를 거치며 29篇이 남아, 西漢代에 관학으로 성립되었으며, 漢石經으로 새겨졌다. 셋째는 漢武帝 때 나온 孔壁本 古文尙書本으로, 西漢代에 민간에서 유행하다가 西晉代에 관학으로 성립되었다. 이 本은 逸書 16篇이 더 있었으나, 민간에 유전된 것은 今文과 동일한 28篇의 古文尙書로, 魏石經으로 새겨졌다. 넷째는 東晉代 梅賾이 올린 『孔傳古文尙書』로, 이 本은 孔傳·孔序와 58篇의 『尙書』를 포함하고 있으며, 東晉代에 관학으로 성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唐代에는 정식으로 통일된 관학 經典이 되어, 玄宗 때 衛包가 隸書를 楷書로 바꾸어 典型을 이루었으며, 이후 唐石經으로 새겨져 일체의 판각本의 鼻祖가 되었다.<sup>56)</sup>

위와 같이 『孔傳古文尙書』는 唐代 『尙書正義』의 底本이 되어, 이후 『尙書正義』의 구성체제·내용체제를 본받은 宋代 『書集傳』·明代 『書傳大全』·清代 『尙書注疏』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尙書』의 주요 注解書들은 구성체제·내용체제 뿐만 아니라 注解의 특징에 따라, 唐代 『尙書正義』·清代 『尙書注疏』의 계통과 宋代 『書集傳』·明代 『書傳大全』의 계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唐代 『尙書正義』·清代 『尙書注疏』는 『尙書正義』의 注解 방식(孔傳·孔疏)을 기본 체제로 하고 있고, 宋代 『書集傳』·明代 『書傳大全』은 『書集傳』의 注解 방식(古注疏·蔡沈注)을 기본 체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尙書』의 주요 注解書는 『尙書正義』 계통·『書集傳』 계통의 2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는 上古시대에 이미 『尙書』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 시대별로 중국으로부터 『尙書』의 주요 注解書들을 수용하여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고대시대

56) 李民·王健(2004), 24-25.

에는 『尙書正義』, 중세시대에는 『書集傳』, 근세시대에는 『書傳大全』·『尙書注疏』가 수용되어, 국가 정식 교재와 과거시험 교재로서 채택되었고 간행·보급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본 『尙書』의 주요 注解書들의 간행·보급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刊印本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奎章閣 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도서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全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간행된 한국본으로 『尙書正義』·『書集傳』·『尙書注疏』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단지 『書傳大全』만이 조선시대에 걸쳐서 폭넓게 刊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書集傳』 계통인 『書傳大全』이 畵시대를 풍미하였기에, 아직까지 많은 본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尙書』의 주요 注解書들 간의 異同관계를 알아보고자, 원문서지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원문서지학적 분석은 『尙書正義』·『尙書注疏』 계통과 『書集傳』·『書傳大全』 계통 간의 구성체제·내용체제(經文·注釋)의 비교 분석과, 『書傳大全』들 간의 구성체제·내용체제(經文·注釋)의 비교 분석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尙書正義』·『尙書注疏』 간에 공통의 구성체제·내용체제(孔傳·孔疏 중심의 注解 방식)와 『書集傳』·『書傳大全』 간에 공통의 구성체제·내용체제(古注疏·蔡沈注 중심의 注解 방식)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에서 『尙書』의 주요 注解書가 『尙書正義』 계통·『書集傳』 계통의 2중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尙書正義』·『書集傳』 간에 經文의 비교를 통하여, 『書集傳』이 『尙書正義』의 經文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약간의 변형·생략이 있으나 그것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당시 국가 공인 注解書인 『尙書正義』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注解의 비교를 통하여 『書集傳』이 『尙書正義』를 근간으로 注解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로써 당시 蔡沈이 『尙書正義』의 注解를 수용·반대하면서 나름대로 독창적인 『書集傳』을 편찬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자면, 『書集傳』에 약간의 독자적 注解가 가미되기는 하였으나 『尙書正義』를 대부분 수용한 배경적 지식 안에서 注解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無數한 尙書類 문헌 중에, 唐代 『尙書正義』·宋代 『書集傳』·明代 『書傳大全』·清代 『尙書注疏』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였다. 그러나 前시대인 조선시대에 『書集傳』 계통의 『書傳大全』만을 숭상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들 注解書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書集傳』에 대한 정밀한 이해는 『尙書正義』를 근간으로 하는 字·音·義 등의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향후 經學사 연구에서 『尙書正義』 계통과 『書集傳』 계통 간의 비교를 통한, 『尙書』의 종합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조선시대를 전후로 四書 위주로 고착화된 經學 연구가 본래의 五經 중심으로 회귀하여, 四書의 기본배경지식부터 정확히 고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十三經 중에 말초인 四書만을 연구하다가, 그 근간 배경지식이 되는 五經의 연구가 소홀히 되어, 현재 經學 연구에서 기초적인 字·音·義가 모두 정확하지 않는 실정이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인 『尙書』가 가지는 위상을 再考하여, 史學·哲學·文學 등의 제반 연구의 기초로 삼아, 最古의 公文書·儒學經典·散文의 始祖로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三國史記』·『三國遺事』·『高麗史』·『高麗史節要』·『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書集傳』·『書傳大全』·『尙書注疏』 등

### 2. 단행본

- 姜廣輝(主編). 『中國經學思想史 제1권』.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溝口雄三·丸山松幸·池田知久(編)/김석근·김용천·박규태(譯).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  
족문화문고, 2003.
- 김동주. 『尙書正義』.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 김학주. 『새로 옮긴 書經』. 서울: 明文堂, 2012.
- 野間文史. 『十三經注疏の研究: その語法と傳承の形』. 東京: 研文出版, 2005.
- 野間文史. 『五經正義の研究: その成立と展開』. 東京: 研文出版, 1998.
- 劉起釡. 『尙書學史』. 北京: 中華書局, 1989.
- 李民·王健. “前言.” 『尙書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蔣伯潛·蔣祖怡(著)/崔錫起·姜貞和(譯). 『儒教 經典과 經學』. 서울: 景仁文化社, 2002.
- 鄭傑文, 傅永軍. 『經學十二講』. 北京: 中華書局, 2007.
- 정인승. “吏讀起原의 再考察.” 『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1957.
- Frank Hole and Robert F. Heizer. 1969. *An Introduction to Prehistoric Arche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 35-36.
- 何耿鏞(著)/장영백·조관희·김애영·박덕교·전영숙(譯). 『經學概說』. 서울: 청아출판사, 1992.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0.

### 3. 논문

李康範. “明代 『五經大全』 纂修의 배경과 經學史的 意義.” 『중국어문학논집』 第74號(2012. 6).  
431-457.

書誌學研究 第70輯(2017. 6)

李忠九. “經書諺解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陳良中. “朱子『尙書』學研究.” 박사학위논문. 華東師範大學 대학원. 2007.

陳良中. “朱子之論王、蘇、林、呂四家『書』學.” 『求索』 第12期(2007. 12). 218-222.

陳良中. “朱子與蔡沈『書』學異同考論.” 『重慶師範大學學報』 第3期(2010. 4). 75-81.

#### 4. 신문 및 잡지

辛司可. 「韓知名學者稱漢字並非中國文字, 韓國人祖先發明漢字」. 《環球時報》 2011년 4월 21일자.